##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62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서영교·황정아·이연희

임오경 • 한민수 • 이재관

백승아 • 박 정 • 박희승

김주영 • 한정애 • 이수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65세의 기대여 명은 21.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임. 또한, 현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 법률 제 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60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세"를 "65세"로, "60세로"를 "65세로"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를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임금체계 개편"을 "고용지원금"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63세, 2028년 1월 1일부터 64세, 2033년 1월 1

일부터 65세 정년을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 제19조(정년) ① -----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 -----65세-----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근로자의 정년을 <u>60세</u> 미만 -----<u>65세</u>----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 -----65 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세로-----.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지원 등) <u>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u>조 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제1항에-----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 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로 정하는 바에----고용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 원금------지원조치를 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마련하여야----. 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u><삭 제></u>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 <삭 제> 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 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